

「직원인사 규정」 신규조문대비표

2022. 12. 19. 개정 판 (시행 2023. 1. 1.) → 2023. 4. 3. 개정 판 (시행 2023. 6. 1.)

바뀜 4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01/compare?from=1401&to=1433>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전 8:52:58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용)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u>전문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u> 2. 기술직인 경우 자격증 없는 <u>대학 졸업자</u> 8급 1. <u>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당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u> 2. <u>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u> 3. <u>대학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u> 5급 <u>국가고시(행정,사법,기술)에 합격한 자</u>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u>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2011.10.01. 개정)</u>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④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9-13〉(시행 2021.10.01.부)	제6조(임용)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개정 2018-11-19〉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u>최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u>학교의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u> 〈신설 2023-04-03〉 ③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u>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u> 2. 기술직인 경우 <u>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u> 8급 1. <u>대졸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u> 2. <u>대졸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로</u>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기능직 직급 자 격 기 준 9급 1. <u>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u> 2. 기능직인 경우 <u>해당분야</u>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④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09-13〉(시행 2021.10.01.부)
제8조(신규임용)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제8조(신규임용)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u>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u>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현행	개정안
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실장, 교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1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총장특보가 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및 임기) 직원인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처장(위원장), 사무부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교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5급 이상 직원대표 1명으로하며, 초청위원은 대외국제처장, 연구산학처장, 입학처장, 총장특보가 된다. <개정 2016-02-29>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승진) ① 승진은 직급별 정관에 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② 승진대상자의 자격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기술직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3급 ↓ 2급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2. 기능직 * <삭제 2018-11-19> * <삭제 2018-11-19> 9등급 ↓	제23조(승진) ① 승진은 직급별 정관에 규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② 승진대상자의 자격연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03> 1. 일반직/기술직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3급 ↓ 2급 2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2. 기능직 * <삭제 2018-11-19> * <삭제 2018-11-19> 9등급

현 행	개 정 안
8등급 8등급 ↓ 7등급 7등급 ↓ 6등급 5년 5년 5년	↓ 8등급 8등급 ↓ 7등급 7등급 ↓ 6등급 5년 5년 5년
③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근무기간,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③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근무기간, 능력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④ (삭제 2019-09-23)	④ (삭제 2019-09-23)
⑤ 승진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승진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연합회 행정위원회 및 배치위원회에서 선임 임명되는 처장, 실장, 과장 등은 한국연합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⑥ 연합회 행정위원회 및 배치위원회에서 선임 임명되는 처장, 실장, 과장 등은 한국연합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임용) ① 직원의 임명, 전직, 전보, 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의 위임 시 총장이 선행하며, 추후 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단, 계약직원의 인사는 총장이 한다)
-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최하위직급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신규 임용기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직/기술직
- 직급
- 자 격 기 준
- 9급
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2. 기술직인 경우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을 소지한 자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8급
1. 대졸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대졸자로서 기술직인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기능직
- 직급
- 자 격 기 준
- 9급
1. 학력과 나이 제한 없으며,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2. 기능직인 경우 해당분야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대형운전면허소지자
- ③ 직원의 임용, 직급 및 직종에 대한 결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한다.
- ④ 직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원채용지침에 따른다.(시행 2021.10.01.부)

제8조 중 "경우 특별"을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로 한다.
제20조 중 "재무실장"을 "재무처장"으로 하고, "대외협력처장"을 "대외국제처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 승진대상자의 자격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기술직

9급

↓

8급

8급

↓

7급

7급

↓

6급

6급

↓

5급

5급

↓

4급

4급

↓

3급

3급

↓

2급

2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2. 기능직

*

*

9등급

↓

8등급

8등급

↓

7등급

7등급

↓

6등급

5년

5년

5년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